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. 1. 15 선고 2019가단171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소송대리인 B

피고C

변론 종결 2019. 12. 4.

판결 선고 2020. 1. 1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992m² 중 496/99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04. 11. 29. 접수 제61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. 11. 24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사실의 인정

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는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E에게 7,000만 원을 대여한 후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담보받기 위하여 2004. 11. 24.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4. 11. 24.부터 10년이 도과한 2014. 11. 24. 무렵 시효로 소멸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서산시 D 임야 992㎡ 중 496/99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04. 11. 29. 접수 제61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김진혜